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6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7.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7. 16.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 제출일자: 2019. 7. 4.
- 회부일자: 2019. 7. 4.
- 검토기간: 2019. 7. 5. ~ 2019. 7. 12.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 정도” 기준 도입
- 기존 6등급의 장애인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등급)의 2단계로 변경

3. 주요내용

- 장애등급 관련 용어 변경(제6조, 별표, 별지서식 변경)
 - 제6조(사업자의 의무)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3급을 포함한다)’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별표 장애등급이 1~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이 1~6급을 ‘등록 장애인’으로 변경
 - 별지서식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안 전반)

4.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5. 검토의견

- 중앙정부는 2018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일 2019. 7. 1.)을 통해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준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기준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준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하여 이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 중.
- 동 개정안은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상위법 개정에 맞춰, 재정비(안 제6조 및 관련 별표)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부합하게 달서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구 차원의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바,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 ② (생략)

-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